

2020.01.

중국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공포와 시사점

2019년 12월 31일 중국 국무원은 “외상투자법 실시조례”《外商投资法实施条例》(이하 “실시조례”라고 약칭함)를 반포하였습니다.

이번에 반포된 실시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외상투자법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시조례는 총 6장의 49개 조로, 총칙, 투자촉진, 투자보호, 투자관리, 법률책임과 부칙의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외상투자법의 구조와 일치하며, 당초 외상투자법 실시조례 의견수렴안의 5장 45개조와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실시조례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 중국 외상투자법(外商投资法) 제정, 2020년 1월 1일 시행 (2019.03.)

I. 실시조례의 주요내용

1. 총칙

(1) 대외개방의 지속적인 확대 선언

본 실시조례에서 중국은 관련정책조치들의 개선을 통해, 대외개방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외상투자환경을 개선하여, 법에 따른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투자를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촉진하며, 외상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외상투자관리를 규범화하고, 외상투자환경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제2조). 또한 외상투자자의 주체에 대해서는 “외상투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 규정한 기타 투자자에는 자연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중국의 자연인도 외상투자기업 또는 신규 프로젝트의 투자자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제3조).

(2)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의 전면적 실시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라고 약칭함)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의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반포하거나, 또는 국무원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후에 국무원 투자주관부서, 상무주관부서가 반포하며, 국가는 진일보한 대외개방과 경제사회의 발전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네거티브 리스트를 조정하고 조정의 절차도 반포의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4조).

(3) 관련 당국의 협조의무 강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는 직무상 권한의 분장에 따라 밀접하게 협조하고, 상호 합작하여 공동으로 외상투자촉진, 보호, 관리-업무를 잘 해나가야 하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외상투자촉진, 보호, 관리업무에 있어서의 조직의 영도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가 법률법규와 권한에 따라 외상투자촉진, 보호와 관리업무를 하는 것을 지지, 감독하고, 적시에 외상투자 촉진, 보호, 관리업무 과정에서의 중대한 문제에 협조,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제5조).

2. 투자촉진

(1) 내외자 기업의 동등한 대우

정부와 관련부서는 자금배정, 토지공급, 세비감면, 자격허가, 표준제정, 프로젝트 신고, 인력자원 등의 방면에서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법에 따라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정부와 그 관련 부서가 제정하는 기업발전 정책은 마땅히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정책적으로 처리에 기업의 신청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그 관련부서가 신청의 조건, 절차, 시한 등을 공개하고, 심의 과정에서는 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제6조).

(2) 외상투자 관련 법규 제정 참여권 보장

외상투자와 관련된 법규, 규정,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는 경우 또는 정부와 그 관련 부서가 외상투자관련 법률, 지방성법규의 기초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좌담회, 토론회, 청문회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외상투자기업과 관련 상회, 협회 등의 의견과 건의를 수렴하고, 의견이 집중되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중대한 권리의무와 관련된 의견과 건의에 대해서는 그 수용여부에 대한 회신을 주어야 합니다. 외상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은 법에 따라 적시에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되지 않은 것은 행정관리의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외상투자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범성 문건은 현실을 반영하여 공포부터 시행까지의 시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제7조).

(3) 외상투자에 관한 서비스 수준의 제고

1)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의 주도과 다양한 주체의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 서비스 체계를 수립 내지 완비하고, 외상투자에 대한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며(제8조), 정부와 관련부서는 정부 홈페이지, 전국 통일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외상투자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규범성 문건, 정책조치와 투자프로젝트 정보를 통일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통로와 방식을 통해 선전, 해석을 강화하여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을 위해 자문,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제9조).

- 2) 외상투자법 제13조의 특수경제구역은 국가비준을 통해 설립된 한층 더 강화된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는 특수구역으로, 일부 지역의 외상투자에 관한 시범적 정책조치들이 시험실행을 통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증명된 경우¹⁾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른 지구 또는 전국적 범위로 확대합니다(제10조).
- 3)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중국 경내 또는 중국 경외에서 주권, 회사채의 공개발행과 공개 또는 비공개 발행의 기타 용자방식, 외채차입 등의 기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제18조).
- 4) 현금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의 규정에 따라 법정권한 내에서 비용감면, 용지지표보장, 공공서비스 제공 등 방면에서의 외상투자촉진과 편리화 정책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외상투자 촉진과 편리화 정책조치는 품질 높은 발전, 경제적 효율과 사회효익 내지 생태효익의 제고, 외상투자환경 개선의 지속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제19조).
- 5) 관련 주관부서는 외상투자가이드를 편제 및 공포하고,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에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외상투자가이드는 투자환경소개, 외상투자처리지침, 투자프로젝트 정보와 관련 데이터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적시에 갱신되어야 합니다(제20조).

(4) 외상투자에 대한 장려 및 우대정책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필요에 따라 장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제정하고, 외국투자자의 투자를 장려 내지 유도하는 특정산업, 영역, 지구를 선정하며, 장려 외상투자산업목록은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의 관련 부서와 준비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에 국무원 투자주관부서, 상무주관부서가 반포합니다(제11조).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재정, 세수, 금융, 용지 등의 방면에서 우대대우를 받고, 나아가 외국투자자가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수익으로 중국 경내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우대대우를 누리도록 하였습니다(제12조).

(5) 표준의 제정과 적용에서의 평등대우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내자기업과 함께 평등하게 국가, 산업, 지방과 단체표준의 제정, 개정 업무에 참여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은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기업과 연합하여 기업 표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표준화 행정부서 내지 관련 행정 주관부서에 표준의 제정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고, 표준 제정의 건의, 초안의 작성, 기술심사와 표준시행 정보에 관한 피드백, 평가 등의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따라 표준의 초안작성, 기술심사의 관련업무와 표준의 외국어 번역업무를 담당합니다. 표준화 행정과 관련 행정 주관부서는 필요한 업무 시스템을 수립 내지 완비하여야 하며, 표준 제정과 개정의 투명도를 제고하고, 표준 제정과 개정의 전과정의 정보를 공개합니다(제13조). 국가가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1) 의견수렴안에서는 "성숙"하였을 경우였던 것을 "실행가능"한 것으로 입증된 것으로 수정하여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경험이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만 강제성 표준보다도 높은 기술요구를 해서는 안됩니다(제14조).

(6) 국가조달시장에의 동등한 참여

정부와 그 관련 부서는 외상투자기업이 자유롭게 해당 지역이나 산업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조달의 조달자, 조달대리기구는 정부조달정보의 반포, 공급상 조건의 확정과 자격심사, 낙찰기준의 표준 등의 방면에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차등대우를 해서는 안되고, 소유제 형식, 조직형식, 지분구조 또는 투자자의 국가, 제품 또는 서비스 브랜드 내지 기타 불합리한 조건으로 공급상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외상투자기업이 중국 경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와 내자기업을 다르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제15조). 외상투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이라고 약칭함)과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부조달 활동사항에 대해 조달자, 조달대리기구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질의를 하고,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를 고발할 수 있고, 조달자, 조달대리기구, 정부조달감독관리 감독 부서는 규정된 시한 안에 회신을 하거나 처리결정을 해야 합니다(제16조).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정부조달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른 시정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차등대우 등의 위법위규행위를 적발합니다(제17조).

3. 투자보호

(1) 수용의 금지와 시가보상

국가는 외국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수용을 하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서 공공이익과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용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법정의 절차에 따라 차별 없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 적시에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를 보상해야 합니다. 외국투자자가 수용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1조).

(2) 자유로운 국외입출금의 보장

외국투자자의 중국 경내의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리소득, 지적재산권 허가사용비, 법에 따라 획득한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인민폐 또는 외환으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고, 어떤 단위와 개인도 위법하게 화폐의 종류, 금액과 송출금 횟수 등의 제한을 해서는 안됩니다.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직원, 홍콩, 마카오, 대만 직원의 급여수입과 기타 합법적인 수입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제22조).

(3)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

- 1)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 정도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신속협동보호 시스템을 수립하며,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완비하고, 외국투자자와 외상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합니다(제23조). 행정기관(법률, 법규의 수권을 받아 공공사업관리 직능을 가진 조직 포함, 이하 동일)과 그 담당자는 행정허가와 행정검사의 실시, 행정처벌, 행정강제와 기타 행정수단과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의 기술양도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제24조).
- 2) 행정기관이 법에 따른 권한 행사 시에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에 제공하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 정보가 명확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 한정하여 알아야 하는 범위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직무상 권한 행사와 무관한 담당자는 관련 자료,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기관은 내부관리 제도를 수립 내지 완비하여 권한 행사 중에 지득한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영업비밀을 유효한 조치를 통해 보호하여야 하고, 법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중에 포함된 영업비밀에 비밀처리를 하고 누설을 방지해야 합니다(제25조).

(4) 외상투자관련 규범성 문건에 관한 합법성 심사

정부와 그 관련-부서가 외상투자자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때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 심사를 해야 합니다.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국무원과 지방인민정부와 그 관련부서가 제정한 규범성 문건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동시에 해당 규범성 문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제26조).

(5) 정책확약의 집행가능성 제고

외상투자법의 "정책확약"이란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서가 법정권한 내에서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해당 지역의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지원정책, 향유할 수 있는 우대조치, 편의사항 등에 대해서 한 서면확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확약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제27조). 지방 각급인민정부와 그 관련-부서는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한 정책확약과 법에 따라 체결한 각종 계약을 행정구획의 조정, 임기만료로 인한 정부의 변경, 기구 또는 직무조정과 관련된 책임자의 교체 등의 이유로 위약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정책확약, 계약상의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이 이로 인해 받은 손실을 적시에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제28조).

(6) 외상투자에 대한 고발 시스템의 구축

- 1)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그 관련-부서는 공개투명, 고효율 편의의 원칙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고발업무기제를 수립 내지 완비하고,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제기하는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책조치의 개선에 협조해야 합니다(제29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들과 외상투자기업의 고발업무에 관한 부처간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하여, 중앙 차원에서 외상투자기업의 고발업무를 협조, 추진하며 지방의 외상투자기업의 고발업무에 대해 지도와 감독 업무를 실시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담당부서 또는 기구를 지정해서 해당 지역의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고발 업무 접수를 담당하게 합니다(제29조).
- 2)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또는 기구는 고발업무 규칙을 개선하고, 고발방식을 완비하고, 고발처리시한을 명확히 하며 고발업무 규칙, 고발방식, 고발처리시한은 대외적으로 공포합니다(제29조).
- 3)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또는 그 담당자의 행정행위로 그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 받았다고 판단하여 외상투자기업 고발업무 시스템에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신청 행정기관과 그 담당자에 대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 피신청 행정기관과 그 담당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되어야 합니다.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시스템을 통한 해결의 협조를 신청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30조).
- 4)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 고발업무 시스템을 통해 제기하거나 해결협조를 신청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압력을 행사하거나 보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상투자기업의 고발업무 시스템 외에도 외상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기타 합법적인 통로를 통해서도 정부 또는 그 관련 부서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1조).

(7) 상회와 협회의 조직과 활동 보장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상회, 협회를 조직할 수 있고,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자발적으로 상회, 협회에 가입 또는 탈퇴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나 개인도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회, 협회는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종에 따른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고, 업계의 요청을 적시에 반영하고, 회원을 위한 정보의 자문, 선전교육, 시장 확대, 경제무역교류, 권익보호, 분쟁처리 등 방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는 상회, 협회가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전개하는 관련 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제32조).

4. 투자관리

(1)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 금지와 제한

외상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금지영역에는 외국투자자의 투자가 금지되고,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제한영역에는 지분요건, 임원 등 방면에서의 제한적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제33조). 관련 주관부서는 외국투자자가 투자하려는 영역이 네거티브 리스트 내의 영역이거나 네거티브 리스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기업등기등록 등 관련 사항의 처리를 해서는 안되고, 고정자산투자 프로젝트의 비준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 비준사항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제34조). 관련 부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외국투자자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투자금지영역에 투자한 것을 발견하거나 외국투자자의 투자활동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제한 진입특별관리 조치에 위반한 경우에는, 외상투자법 제36조의 규정²⁾에 따라 처리합니다(제34조).

(2)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과 비준의 내외자 일치 원칙

- 1)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데 허가가 필요한 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허가기관은 내외자일치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의하고, 허가조건, 신청자료, 심의단계, 심의시한 등의 방면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제35조).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관련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심사비준 서비스를 개선하고, 심사비준의 효율을 제고합니다. 관련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고지확약의 방식으로 허가를 내 줄 수 있습니다(제35조). 나아가 외상투자 프로젝트에 비준, 비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제36조).
- 2) 외상투자기업의 등기등록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로부터 수권을 받은 지방인민 정부 시장감독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하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 부서는 그가 수권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명단을 공포하여야 합니다.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표시할 수도 있고 자유태환 화폐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제37조).

2) 외상투자법 제36조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투자금지 영역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관련 주관 부서가 투자활동의 중단, 기한내의 주식, 자산의 처분, 기타 필요한 조치 내지 투자 시행전으로의 회복을 명하고, 위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소득을 몰수합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제한성 진입특별관리조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주관부서가 기한내 시정,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여 진입특별관리조치의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하고, 기한을 초과하여서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외국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들에 의해 처리하는 외에도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부담합니다.

(3) 외상투자자에 대한 정보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

- 1)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과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무 주관부서에 투자정보를 송부해야 합니다. 국무원 상무부서는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와 함께 관련업무 시스템의 호환과 업무수행을 원활히 협조하고,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정보 송부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합니다(제38조). 외상투자 정보보고의 내용, 범위와 보고 횟수 및 절차는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가 국무원 시장감독 관리부서 등의 관련부서와 명확한 필요성과 고효율편리의 원칙에 따라 확정 및 공포합니다. 상무부 주관부서, 기타 관련부서는 부서간의 정보공유를 강화하여 부서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투자정보는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에 반복해서 송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외국투자자 또는 외상투자기업이 송부하는 투자정보는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제39조)³⁾.
- 2) 국가는 외상투자 안전심사제도를 수립하고,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상투자에 대해서는 안전심사를 진행합니다(제40조).

5. 법률책임

- (1) 정부 관련 부서와 그 담당자가 아래의 상황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1) 관련 정책을 제정 내지 실시하면서 법에 따라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경우, 2) 외상투자기업이 평등하게 표준제정, 개정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위법하게 제한하거나 외상투자기업에만 특별히 강제적 표준보다도 높은 기술요구를 하는 경우, 3) 위법하게 외국투자자의 자금의 송출을 제한하는 경우, 4)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한 정책확약과 법에 따라 체결된 각종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법정 권한을 초과한 정책확약을 하거나 정책확약의 내용이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제41조).
- (2) 정부조달의 조달자, 조달대리기구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차등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법과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하고, 낙찰, 거래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조달법과 그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제42조). 정부조달 감독관리 부서가 외상투자기업의 고발에 대해 기한을 경과하여서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책임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하며(제42조), 행정기관 또는 그 담당자가 행정적 수단을 이용하여 강제 또는 변칙적으로 외국투자자, 외상투자기업의 기술 양도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접책임담당자 또는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합니다(제43조).

3) 한편 외상투자정보의 보고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 상무부와 시장감독총국은 연합하여 "외상투자정보보고판법"《外商投资信息报告办法》을 반포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외상투자자가 보고해야 하는 정보에는 최초보고, 변경보고, 말소보고, 연도 보고가 있습니다.

6. 부칙

- (1) 외상투자법 시행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이하 "외상투자기업")은 외상투자법 실시 후 5년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조합기업법 등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조직형식, 조직기구 등을 조정하고 법에 따라 변경등기를 할 수 있고, 원래의 기업형식, 조직기구 등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으나, 2025년 1월 1일부터 법에 따라 조직형식, 조직기구 등을 조정하지 않고 변경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신청한 기타 등기사항을 처리하지 않고 관련 사항을 공시합니다(제44조).
- (2) 현행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 등의 변경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정 및 반포하며,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변경등기 업무 지도를 강화하여 업무처리 가이드를 편제 및 반포하고 변경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변경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업이 변경등기를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제45조).
- (3) 현존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가 법에 따라 조정된 후에도 원래의 합영, 합작 각 당사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지분 또는 자산의 양도방법, 수익분배방법, 잔여재산분배 방법 등은 원래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제46조). 한편 외상투자기업의 중국경내의 재투자는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제47조).
- (4)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투자자의 내지투자는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합니다.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며 대만지구 투자자의 대륙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대만동포투자보호법과 그 실시세칙 규정을 적용하고, 대만동포 투자보호법과 그 실시세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합니다. 국외에서 정주하는 중국 공민의 중국 경내투자에 대해서는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하고,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제48조).
- (5) 본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합영기한잠행규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되고, 2020년 1월 1일 전에 제정된 외상투자 규정과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상투자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합니다(제49조).

II. 시사점

1. 이번에 반포된 실시조례는 의견수렴안에 비해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청구, 질의와 고발조항, 국가의 수용에 대한 시가 보상 및 구제방법으로서의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제기 규정,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에 대한 인민폐 또는 자유태환화폐로의 표기, 외상투자법 실시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담당자들의 법률책임 조항 신설 등이 달라졌습니다.
2. 그러나 2019년 상표법 개정안에는 이미 반영되었고, 저작권법, 특허법 개정안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외상투자법과 실시조례의 핵심으로 거론되었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삭제되고, 또한 의견수렴안 제35조의 “중국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중국 경외에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이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 부문의 심의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외상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규정한 진입특별관리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우회투자(返程投)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민영기업과 국내산업 대한 보호와 외자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삭제는 외국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3. 기본적으로 네거티브 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 중국시장의 진입의 문턱이 낮아 지고 있다고는 하나, 공연산업, 부가전신서비스산업, 외상투자건축, 항공 등의 여러 분야에서 주주의 자격, 업무실적, 등록자본금 등의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열거한 것 외에도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시조례 제35조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데 허가가 필요한 산업,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 행정법규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허가의 발급부서는 내외자일치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의하고, 허가조건, 신청자료, 심의단계, 심의시한 등의 방면에서 외국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고 규정하여, 특수한 영역에 외자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자기업과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이 실제로 개방될지는 실시조례의 실제 시행에 따른 법률과 행정법규의 정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4. VIE구조에 대해서는 실시조례도 이를 정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상투자법 제2조는 외상투자의 정의에 대해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조직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 진행하는 투자활동으로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 기업에 취득하는 주식, 지분, 재산지분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간접적으로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한다는 규정에 따라 VIE구조에 대한 통제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외상투자법 제35조에서 규정한 외상투자 안전심사제도에 대해 실시조례 의견수렴안에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최종안에 다시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현재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해 외상투자를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전심사”제도를 통해 외상투자를 통제할 여지는 아직은 많아 보이지 않지만, 국가안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한 개념으로 외상투자기업들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잠재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심사방법을 외상투자법 내지 실시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외상투자법과 실시조례의 핵심적인 방향은 내외자에 대한 동일한 취급입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동시에 중국 시장에 높아가는 준법외무의 표준에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인터넷 환경에 관한 컴플라이언스의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지에서 준수해야 하는 법률법규의 반포와 시행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CONTACT



강희철 변호사
02-528-5203
hckang@yulchon.com



이명재 외국변호사
02-528-5893
mjlee@yulchon.com



변응재 변호사
02-528-5797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86-185-0085-2518
whuh@yulchon.com



김중부 외국변호사
02-528-5043
zfjin@yulchon.com



NATIONAL FIRM OF THE YEAR
SOUTH KOREA
CHAMBERS ASIA-PACIFIC AWARDS

Yulchon LLC

Korea | Vietnam | China | Myanmar | Russia | Indonesia*

* in association with Roosdiono & Partners

[구독신청](#) | [율촌 간행물 더 보기](#) | [Contact Us](#)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